



# 경 기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등록번호판 가림 관련 처리기준 알림

1.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-7088(2022.10.1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5항 "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" 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성 유무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3. 그러나 "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" 는 해석의 차이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별 처분이 달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불임과 같이 제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등록번호판 가림 처리기준 1부. 끝.

## 경 기 도 자 사



수신자 수원시장,고양시장,용인시장,성남시장,부천시장,안산시장,화성시장,남양주시장,안양시장,평택시장,의정부시장,파주시장,시흥시장,김포시장,광명시장,광주시장,군포시장,이천시장,오산시장,하남시장,양주시장,구리시장,안성시장,포천시장,의왕시장,여주시장,양평군수,동두천시장,과천시장,가평군수,연천군수

주무관	김경석	자동차관리팀장	김제연	택시교통과장	한경수	전결 2022. 10. 19.
-----	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택시교통과-20656 (2022. 10. 19.) 접수 차량등록과-49678 (2022. 10. 19.)

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(신곡동, 경기도청 북부청사) / <http://www.gg.go.kr>

전화번호 031-8030-3725 팩스번호 031-8030-3619 / [kks870@gg.go.kr](mailto:kks870@gg.go.kr) / 대국민 공개

## 등록번호판 위반사례 및 처리기준

### □ **관련판례**(창원지방법원 2014과1164 자동차관리법 위반, 14.12.31.)

○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‘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’ 고 규정하고 있고, 여기서 ‘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’ 는 의미는 사람의 육안 내지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

### □ **구체적 위반사례**(예시)

- ① 끈적한 것(물엿, 기름 등)을 도포하여 주행 중 먼지가 달라 붙게 함
- ② 강한 광량(LED)이나 번호를 가리는 번호판 가드(테두리선을 조금 침범한 가드는 원상 복구명령)
- ③ 페인트 칠로 알아보기 어렵게 함
- ④ 숫자를 사포나 수세미로 벗김
- ⑤ 번호판 찌그러뜨림(찍기)
- ⑥ 수건 등을 걸어 보는 각도에 따라 번호가 안보이게 함
- ⑦ 배달통 지지대의 쇠기둥으로 번호 가림
- ⑧ 화염방사(불로 그을려서 검게 만들)
- ⑨ 반사스티커 부착(번호판 여백 일반 스티커 부착 원상복구명령)
- ⑩ 자물쇠 가림(일명 순대락)
- ⑪ 매직으로 등록번호 위조하기
- ⑫ 인형이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기
- ⑬ 휴대폰 자석 케이스 붙임

### □ **처리기준**

- (기준) 사람의 육안 내지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등록번호 확인 가능 유무
- (식별 가능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에 따라 기한내 원상복구 명령, 기한내 이행(실물 또는 사진확인)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
- (식별 불가능)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여 고의성이 없을 경우 50만원 과태료, 고의성이 있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1의2에 따라 벌금 조치